

##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장 안전인증  <신설>	제2장 안전인증  제11조의1(제조사 시험결과 인정 등)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자 시험결과로 안전인증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‘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’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.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OLAS, IECEE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,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③ ‘전기용품 제조자 시험소’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3장 자율안전확인신고등  <신설>	제3장 자율안전확인신고등  제17조의1(제조사 시험결과 인정 등) ①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적합하고 제조자 시험결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‘전기용품 제조 자시험소’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.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OLAS, IECEE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,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③ “전기용품 제조자시험소”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